

제 873 호  
1981.11.30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장 박 영 수  
편집 : 공 보 관 이 총 우  
전화 725-7834  
인쇄 : 서울특별시종합발간실  
전화 725-6090

# 시 보

## 차 례

◎ 규 칙		
제 1939 호 :	서울특별시소원심의회규칙중개정규칙 .....	3
◎ 교 시		
제 424 호 :	엘. 피. 지자동차충전소허가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 .....	3
제 425 호 :	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허가변경 .....	5
제 426 호 :	도시계획사업 ( 학교 ) 시행허가변경 .....	6
제 427 호 :	도시계획사업 ( 도로 ) 실시계획인가 .....	6
제 3 호 ( 도봉구 ) :	'82 광고물시범가로정비계획지정고시 .....	7
제 125 호 ( 관악구청 ) :	광고물제획정비지구지정고시 .....	8
◎ 공 고		
제 333 호 :	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재정자금운용요강및집행요령 .....	8
제 337 호 :	KS 표시장지취분공고 .....	9

<이면계속>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

# 서울특별시

제 338 호 :	KS 표시정지처분해제 공고 .....	9
제 341 호 :	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일부변경공람 공고 .....	9
제 634 호 (중구) :	공인개시공포 .....	10

◎ 사 령

◎ 출석통지

**규 칙**

서울특별시 소원심의회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

1981년 11월 30일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

◎ 서울특별시규칙제 1939호

서울특별시소원심의회  
규칙중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소원심의회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2조 (구성)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4인이 상 6인이하로 구성한다.

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내부국장, 보건사회국장, 건설관리국장과 변호사 또는 대학교수중 시장이 위촉한자가 된다.

제 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3조 (위원장등의 권한) ①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한다.

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

원장,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**부 칙**

이 규칙은 1981년 11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**고 시**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24호

L.P.G 자동차충전소허가  
기준및절차에관한고시

가스사업법 제 3조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 3조, 동법시행령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제조(L.P.G 자동차충전소) 허가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

1981. 11. 27

서울특별시장 박영수

고압가스제조(L.P.G 자동차충전소)  
허가기준및절차

1. 신청절차

허가기준에 의거 제 3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당시 시민과에

신청하여야 함.

2. 허가기준

가.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 6 조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자.

나. 정유회사의 가스공급계약을 체결한 자 (고시일 이후에 체결한 계약에 한함)

다. 지역

○ 건축 및 도시계획 관계법상 설치와능 지역이며 기타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지역일 것.

○ 광화문 원표기점 반경 5km 외곽지역일 것.

○ 충전소 상호간 직선거리 1km 이상 유지할 것.

○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의 외면으로부터 학교외의 거리 200m 이상을 유지할 것.

단, 학교외의 거리 200m 이내 지역일 경우 사교육감의 인정을 첨부할 것.

라. 시설기준

○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5 조의 시설기준 및 기술상 기준에 적합할 것.

○ 저장탱크는 지하에 기계실은 지상에 설치할 것.

○ 수송장비로 탱크로리 (7.5톤 급이상) 1대 이상 확보할 것. (용차계약도 가함)

○ 보안전력장치로 발전기(10KW)

1대 이상 확보할 것.

○ 시설대지 1,000㎡이상 관리 사무실 83㎡ (사무실 49.6㎡, 숙직실 16.5㎡ 수세식화장실 16.5㎡) 캐노피 66㎡이상 확보할 것.

마. 보안거리 유지

○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의 외면으로부터 법정 보안거리를 유지할 것. (다만, 인접대지에 보안물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대지와 의 경계선을 보안물로 간주한다.)

바. 대지는 일면이 20m 이상 도로(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)에 접한 1,000㎡이상의 자기소유대지 또는 대지의 공증된 매매계약서 및 공증된 사용승락서가 있어야 하며 허가 후 2년 이내에는 타인에게 양도 불가함.

○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의 외면으로부터 다음에 정한 거리 이내 건물주의 동의를 받을 것.

주거지역	: 결정보안거리의	4배
상업지역	: " "	3배
자연녹지지역	: " "	2배
준공업지역	: " "	2배

3. 제출서류

가.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 3조에 규정된 서류

나. 도시계획 확인증명서, 토지대장 등본 및 시설에가지를 표시한 1/5,000지도 각 1부 (타인소유대 지인 경우 공증된 매매계약서 및 공증된 사용승락서 동시첨부)

다. 저장설비 및 처리설비의 외면으로 부터 일정한 거리이내 건물주의 동의서

라. 경유회사와의 가스공급계약서

마. 서울특별시 수입증지 20,000원

4. 허가신청처리

○ 특정지역에 경합신청 (업소간 거리유지등 경합)이 있을 경우 접수순위에 의한다.

5. 기타 상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 연로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전화 : 725-7734)

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425 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변경

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6 호 (81.5.26)

로 도시계획사업 (학교) 시행허가된 관내 정릉동산 16-1 외 2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463 호 (79.12.10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이를

고시 하고.

2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도시계획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코딩다.

1981. 11. 27

서울특별시 장

가. 사업시행지 : 성북구청능동산 16-1 외 2필지

나. 사업의 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

명칭 : 학교법인 성안학원 교지조성 및 진입로공사

다. 사업의 규모 : 7,467㎡

라. 사업시행자 주소, 설명 변경전 : 성북구청능동산 16-1, 학교법인 성안학원 이사장 김 영 순

변경후 : 성북구청능동산 16-1, 학교법인 성안학원 이사장 박 승 서

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연일

변경전 : 80.6.23 부터 81.12.31 까지

변경후 : 80.6.23 부터 82.12.30 까지

바. 위치 및 계획평면도 : 별첨 (도면생략)

\*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26호

도시계획사업 (학교)  
시행허가변경

- 1. 서울특별시고시제 278호 (81.7.27)로 도시계획사업 (학교)시행허가된 관내 정능동산 17-6의 1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제 24조 및 건설부고시제 463호 (79.12.10)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기 이를 고시하고
- 2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도시정비과 및 시민봉사실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11. 27

서울특별시장

가. 사업시행지 : 성북구정능동산 17-6의 1필지

나. 사업의종류 : 도시계획사업 (학교)  
명칭 : 운동장시설 (중학교용)

다. 사업의규모 : 총사업 시행면적 38,742 ㎡  
운동장시설면적 5,387 ㎡ (1,629평)

라. 사업시행자 주소, 성명

변경진 : 성북구정능동산 16-1,  
학교법인 성한학원이사장  
김영순

변경후 : 성북구정능동산 16-1,  
학교법인 성한학원이사장  
박승서

- 마. 사업의 착수 및 준공년월일  
변경전 : 81.8.5부터 81.11.30까지  
변경후 : 81.8.5부터 82.12.30까지
- 바. 위치 및 계획평면도 : 별첨 (도면생략)

\*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.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427호

도시계획사업 (도로)  
실시계획인가

- 1. 서울특별시공고제 281호 (81.10.24)로 공람공고한바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(도로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을 인가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
- 2. 관계도서는 등대문구청 토목과에 비치하여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1. 11. 26.

서울특별시장

<p>1. 사업시행의 위치 : 동대문구 용무동 10-1 용무동 39</p> <p>2. 사업의 종류와 명칭 : 청량리역 주변 정리공사</p> <p>3. 사업의 규모 : 도로확장 폭 50m 연장 110m 도로포장 폭 50m    연장 110m           폭 20m    연장 240m           폭 15m    연장 210m</p> <p>4. 사업시행자 : 서울특별시 (동대문구청장)</p> <p>5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: 81.11.26 - 82.5.31</p> <p>6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 : 별첨조서</p> <p>7.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수용법 제 4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성명 : 별첨토지조서</p>	<p>◎ 도봉구청 고시 제 3 호</p> <p>도봉구광고물시범가로정비계획 지 정 고 시</p> <p>1. 서울특별시 광고물등 관리법 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시범가로 정비계획지구로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.</p> <p>2. 정비지구내의 모든 광고물은 고시일로부터 정비계획이 확정될때까지 신규제시 및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.</p> <p>3. 관계도서는 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 공람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1.12. 1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도 봉 구 청 장</p>
--	--

가 로 명	구 간	연 장	비 고
백운로	수유동 231-43부터 우이동 203번지 (동측)	2,900미터	도로좌우전면 건물부분
백운로	수유동 185-1부터 우이동 203까지 (서측)		

**○ 관악구청 고시제 125 호**  
 관악구광고물계획정비지구지정고시

1. 서울특별시 광고물통 관리법 시행규칙 제 7 조에 의하여 광고물계획정비지구를 다음과 같이 지정 고시한다.  
 2. 계획정비 지구내의 모든 광고물

은 고시일로 부터 정비계획이 확정될때까지 신규제시 및 변경행위를 할 수 없다.  
 3. 관계도서는 구청 건설관리과에 비치 공람한다.

1981년 11월 26일  
 관 악 구 청 장

○ 계획정비지구

구 간	년 장	비 고
봉천 4거리 - 서울대 862-1-신림 145-1 봉천동 857-1-신림 155-1 번지에 이르는 도로 양면	권 도 ( 1,500 )	도로좌우전면건물부분

**공 고**

**○ 서울특별시공고제 333 호**  
 서울특별시중소기업육성채정자금운용요강 및 동집행요령개정공고

채정자금 예수 예탁 및 용자금 리조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 채정자금운영요강 및 동집행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개 정 사 함

자금명	개정사항	개 정 내 용	
		현 행	개 정
중소기업 운전자금	운용요강제 5조 2	금리(년) 18.5%	금리(년) 17.5%
	" 제 8조 2	" 17 %	" 16 %
	집행요령 4	" 18.5 %	" 17.5 %

시행 81.11.9부터 적용 시행하며 81.11.8일 이전에 대부분 자금에도 적용함  
 1981.11.26.  
 서울특별시 장

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37 호

KS 표시정지처분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표시정지처분을 하였기 동법 시행규칙 제 21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.

1981.11.27.

서울특별시 장

허가번호 : 1880

업체명 : 칠성화학공업사

소재지 :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 417-2

대표자 : 장 덕 모

규격번호 : 케이.에스.엠 3401

품명 : 수도용 경질연화 비닐관

종류및등급 : 직관 50mm/φ

처분기간 : 처분일로부터 3개월

처분사유 : 케이.에스 규격미달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38 호

KS 표시정지처분해제공고

공업표준화법 제 81조 규정에 의거 KS 표시정지처분한바 있는 아래 계층에 대하여 동처분을 해제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조 규정에 준하여

이를 공고한다.

1981.11.27.

서울특별시 장

허가번호 : 제 2084 호

허가일자 : 80. 5.29

제조업체명 : 신광전기공업사

대표자 : 김 선 철

소재지 : 서울 강서구 등촌동 312

규격번호 : KS 8302

품명 : 소켓

종류등급 : 키아리스 소켓 26

6A 3000 (코오트용자기계)

처분일자 : 81. 8.27

해제일자 : 81.11.27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341 호

재개발사업관리처분계획일부변경공고

1. 주택개량에 의한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된 아현1구역내 일부토지 (39구획)에 대하여
2. 도시재개발법 제 41조 및 제 65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고 그 내용을 공고일로부터 30일간 토지이해관계인 및 소유자에게 보이고 있으며

3. 변경대상 물건지에 대하여는 동  
 계획변경인가시 까지 사용수익을  
 제한하여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 
 건설관리국 주택계 당좌와 관할구청  
 주택부에 비치하고 공람한다.

가. 명 칭 : 재개발사업 관리처분  
 계획일부변경

나. 변경구역 : 아현 1구역 39 구획  
 (마포구 아현동 378-18 일대)

다. 면 적 : 1,319.1평

라. 시 행 자 : 서울특별시장

1981.11.30.

서울특별시장

◎ 중구공고제 634 호

공인 개 각 공 고

서울특별시 공인조례 제 6 조의 규  
 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당 3 동장  
 의 직인 및 재인을 개각하였기 동  
 조례 제 9 조에 의거 공고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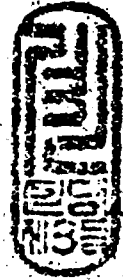
1. 개각사용년월일 : 1981.12.1

09:00 부터

2. 개각된 직인 : 신당 3 동장직인 및 재인

3. 공인 개 각 인 영

인



영

공인 명

신당 3 동장직인 및 재인

1981.12.1.

서울특별시 중구 청 장



◎ 1981년 11월 9일자 명제 445 호

종합운동장건설본부장  
 지 방 이 사 관 배 분 찬

내무국 (윤범표조직위원회파견) 근무를  
 명함.

◎ 1981년 11월 26일자 명제 483 호

공무원교육원  
 지방행정사무관 김순직

사회정화위원회 파견 근무를 명함.  
 ( 81.12.5 - 82.12.4 )

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령제 485 호</p> <p>통계 전산담당관 지방행정직 8급상당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백 귀 아</p> <p>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.</p> <p>◎ 1981년 12월 1일자      령제 486 호</p> <p>보건연구소사무과장 지방행정 사무관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조 윤 제</p> <p>종합기술시험연구소 관리부 사무과장</p>	<p>토목시험소사무과장 지방행정 사무관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여 전 영</p> <p>종합기술시험연구소 관리부 경리과장</p> <p>연료시험소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경 권 호</p> <p>지방행정 사무관</p> <p>종합기술시험연구소 관리부 연료시험과장</p>
---	---

령제 487 호

성명	발령 사항	현 부 서	직 급
강운수	종합기술시험연구소	보건연구소	지방행정주서
한상영	"	"	"
이정희	"	"	서기
이상윤	"	"	"
김경석	"	"	"
이종순	"	축산물위생검사소	주사
김종철	"	"	서기
임구섭	"	토목시험소	주사
이민수	"	"	서기
최권신	"	"	"
김덕수	"	계량기검정사업소	주사보
전국찬	"	"	서기
정찬영	"	"	서기보
이훈영	"	연료시험소	주사

성 명	발령사항	현 부	직 급
김상본	종합기술시험연구소	연료시험소	지방행정서기
김경옥	"	보진연구소	수사보
명제 488 호			
최운섭	종합기술시험연구소	보진연구소공해측정장비관리원	지방 6 급 상당
이원종	"	"	"
김인태	"	"	"
이충연	"	"	"
김영일	"	공해측정기사	지방 7 급 상당
허한목	"	"	"
원유숙	"	"	"
신인희	"	"	"
디상수	"	"	"
이상철	"	"	"
최영훈	"	"	"
여인학	"	"	"
금병섭	"	"	"
최금숙	"	"	"
오동일	"	"	"
김강원	"	"	"
이해식	"	"	"
익호연	"	"	"
이세봉	"	"	지방 8 급 상당
성시경	"	공해측정장비관리원	"
조정철	"	"	"

© 1981년 11월 27일자 명제 489 호 공무원교육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손흥구 행정사무관 '88 울림퍼즈직위위원회 파견근무를 면함(81.11.19-83.11.18) 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봉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령	서울특별시 © 1981년 11월 28일자 명제 494 호 김리과장 서기관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임형철 내무국(지하철공사파견) (81.11.1-81.12.31)
--	--

감사담당관 지방행정사무관	권 오 호	운 수 2 과 지방행정주사보	고 재 호
내무국 (대통령비서실파견)		강 서 구	
© 1981년 11월 30일자	경제 495 호	운 수 2 과 지방행정주사보	윤 훈 근
운 수 1 과 지방행정주사	권 경 근	관 약 구	
보건사회국		운 수 2 과 지방행정서기	김 환 녁
운 수 1 과 지방행정주사보	김 두 검	도시가스사업소	
시립 대학		운 수 2 지방행정서기	김 지 호
운 수 1 과 지방행정주사보	조 중 환	성 동 구	
강 동 구		운 수 2 과 지방기계기사보	김 수 희
운 수 1 과 지방행정주사보	박 년 주	성 동 구	
동 대 문 구		운 수 2 과 지방기계기사보	박 관 수
운 수 2 과 지방행정주사	김 태 호		
공무원교육원 (행정주사)		운 수 2 과 지방기계기사보	
운 수 2 과 지방행정주사보	윤 하 립		
시립 대학		용 산 구	

령제 496 호

성명	발명사항	현부서	직급
강진웅	교 통 국	종로구시민봉사실	지방행정주사보
차석환	"	" 총 무 과	" "
홍희박	"	서대문구총무과	" "
박상호	"	구로구 "	" "
강장원	"	강남구논현동	" "
황제영	교통국(지방행정주사)	양 정 과	행 정 주 사
정진교	교 통 국	강남구진설관리과	지 방 행 정 주 사
이종욱	"	" 시 민 봉 사 실	" "
기은규	"	중 구 총 무 과	지 방 행 정 주 사 보
김영수	"	성북구총무과	" "
박기호	"	도봉구 "	" "
고준기	"	강서구 "	" "
염성호	"	종로구창신2동	" 주 사
주장수	"	은평구	지 방 기 계 기 사 보
최배홍	"	세종문화회관	지 방 행 정 주 사
신경호	"	용산구	지 방 기 계 기 사 보
정대근	동 대 문 구	북지과	지 방 행 정 주 사

© 1981년 11월 28일자령제 497 호

내 무 국 정 연 수  
지방건축기사

지방공무원법제 31 조제 1 항제 4 호 및  
동법제 61 조의 규정에 의거 81.9.28 자  
로 당연 퇴직

령제 498 호

운 수 1 과 최 성 응  
지방행정사무관

기획관리실 (올림픽기획반)

운 영 과 최 명  
지방행정사무관

기획관리실 (올림픽기획반)

주 택 행 정 과 추 진 감  
지방행정주사

기획관리실 (올림픽기획반)

관 재 과 유 형 태  
(지방행정주사)

기획관리실 (올림픽기획반)

서울특별시장

출 식 통 지 서

인적사항	성명	이 재 오 ( )	소속	고등교육준수 1과
	직명		직명	지방행정주사
본적주소	본적	서울시용산구후암동142-1		
	주소	서울시동작구신도3동335-56		
인적사항	성명	박 종 인 ( )	소속	고등교육준수 1과
	직명		직명	지방행정주사
본적주소	본적	서울시강남구역삼동339		
	주소	서울시구로구북산2동산209-19		
인적사항	성명	최 영 환 ( )	소속	고등교육준수 1과
	직명		직명	지방행정주사
본적주소	본적	충남연기군금의면읍내리257		
	주소	서울시구로구시흥3동325-8		
출석이유	인사위원회진술			
출석일시	1981년 12월 8일 11시 00분			
출석장소	시청기획상황실			
유의사항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하기 진술권 포기서를 즉시 제출할 것.</li> <li>2. 사경에 의하여 서면진술을 하고자할 때에는 인사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도착하도록 진술서를 제출할 것.</li> <li>3. 정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서 또는 진술권포기서등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술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 처리한다.</li> </ol>			
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귀하의 출석을 통지합니다.				
1981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				
진 술 권 포 기 서				
인적사항	성명	( )	소속	
	직명		직명	
본적주소	본적			
	주소			
본인은 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을 포기합니다.				
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				